

의안번호	2205418
의 퇴 인	유용원의원
회 답 일	2025.1.14.
추 계 번호	24D49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을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 학생(이하 “RNTC”),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간부사관”) 및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710억 5,600만원(연평균 142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RNTC 및 간부사관	3,864	4,784	4,784	4,784	4,784	23,000	4,600
단기복무부사관	8,009	10,012	10,012	10,012	10,012	48,056	9,611
합계	11,873	14,796	14,796	14,796	14,796	71,056	14,2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장려금 지급대상을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이하 “RNTC”),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간부사관”¹⁾),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행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른 사관후보생임
- 장려금 지급단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상 2027년까지 1인당 2,6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2,60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8년 이후는 2,600만원이 유지되고, 장교와 부사관의 장려금은 같다고 가정함
- 장려금 지급대상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최근 3년간 추가 지급대상의 평균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1인당 지급금액이 1,200만원에서 2027년 2,600만원으로

1) 간부사관은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사관 및 현역병, 전역후 2년 미경과인 예비역 대상으로 선발하여 14주(가입교 1주 제외)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현행법 상 장려금 지급대상인 현행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은 제외하고 현역병으로서 간부사관을 통해 임관된 인원을 산정하였음. 예비역의 병으로서 간부사관을 통해 임관된 인원은 자료추출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함

인상할 경우, 지원자가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

- 현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군인보수법」 제17조의2 및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려금과 장려수당 간의 지급단가의 차이만을 고려함
- 개정안 부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RNTC 및 간부사관 임관대상자에게 장려금 지급(안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1) 개요

- 현재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과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2] 장려금 지급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 대상	합계	4,032	4,054	3,761	3,634	3,179
	예비장교후보생	225	308	420	368	278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459	3,311	3,010	2,769	2,582
	대학재학생 중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사관후보생	348	435	331	497	319
지급단가		2	3	4	6	9
총 지급금액		8,006	11,874	14,948	21,773	28,373

주: 총 지급금액은 실제 지급시기 기준으로 작성하여, 전년도 지급대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급대상×지급단가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방부

(2) 지급대상

- 개정안은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RNTC),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간부사관)에게 장려금 지급을 확대
- 개정안에 따른 RNTC 및 간부사관 출신 임관인원은 최근 3년 평균 184명으로, 추계기간에 184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RNTC 및 간부사관을 통해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관된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RNTC 및 간부사관을 통해 부사관 및 장교 임관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에 따른 증가 규모를 추정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표 3] 개정안에 따른 장려금 추가지급 대상: 2021~2023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RNTC	170	181	152	168
간부사관	24	14	10	16
합계	194	195	162	18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지급단가

- 장려금 지급단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상 2027년까지 1인당 2,6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

으로 2,60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8년 이후는 2,60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장려금 지급단가: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장려금 지급단가	21	26	26	26	26

주: 2029년 이후 지급단가는 2028년과 같다고 가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RNTC 및 간부사관 임관대상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30억원으로 추계됨

[표 5]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RNTC, 간부사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	184	184	184	184	184	920
지급단가	21	26	26	26	26	0
추가재정소요	3,864	4,784	4,784	4,784	4,784	23,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 지급(안 제62조의2제1항제5호)

- 현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4년 예산상 지급단가는 1,000만원임

[표 6]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지급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지급단가	5	5	5	5	7.5	10
지급대상	948	973	1,114	3,281	1,612	3,375
총예산	4,740	4,867	5,571	16,405	12,090	33,750

자료: 국방부

- 추계에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이 폐지된다고

가정하여, 장려수당과 장려금 간의 지급단가의 차이를 고려함

- 추계기간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 지급대상자 수 평균인 2002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지급단가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급단가 차이로 아래 표와 같음

[표 7]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급단가 차이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장려금 지급단가(A)	21	26	26	26	26
장려수당 지급단가(B)	17	21	21	21	21
차이(A-B)	4	5	5	5	5

주: 2029년 이후 지급단가는 2028년과 같다고 가정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수당 대신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480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단기복무부사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	2,002	2,002	2,002	2,002	2,002	10,012
지급단가	4	5	5	5	5	—
추가재정소요	8,009	10,012	10,012	10,012	10,012	48,05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을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 학생(RNTC),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간부사관) 및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710억 5,600만원(연평균 142

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RNTC 및 간부사관	3,864	4,784	4,784	4,784	4,784	23,000	4,600
단기복무부사관	8,009	10,012	10,012	10,012	10,012	48,056	9,611
합계	11,873	14,796	14,796	14,796	14,796	71,056	14,2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장려금 및 장려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른 장려금 추가 지급대상 수는 최근 3년간 대상인원의 평균을 가정하여 산정된 결과로,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관후보생 및 단기복무부사관 증가는 고려되지 않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